

갈등조정위원회 규정

제정(2019.08.0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호서대학교 갈등조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·권고한다.

1.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 및 해결방안
2. 다양한 갈등해소 수단의 개발·적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선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1. 본교에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
2. 교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교직원

② 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갈등조정 신청이 있거나, 총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내용,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) 위원이 갈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제6조(심의 등 결과의 처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참석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.